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5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한 제조업 생산능력(1일 8시간 기준)으로 한다. 다만,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사료와 같은 날 같은 선박 등으로 수입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같은 날 제조한 같은 사료가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.
- 라. 과징금 하한은 50만원으로 하고, 그 상한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구 분	영업의 전부 정지			영업의 일부 정지		
	배합사료	단미사료	보조사료	배합사료	단미사료	보조사료
과징금 금 액	1일 과징금 금액: 생산 능력(수입 량) 1톤당 500원	1일 과징금 금액: 생산 능력(수입량) 1톤당 5,000 원. 다만, 곡 물류·곡물 부산물류· 박류(粕類: 식물성 원 료에서 원 하는 물질을 썪 나머지) · 섬유질류 · 면실·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의 경우에는 1 톤당 500원	1일 과징금 금액: 생산 능력(수입량) 1톤당 10,000 원. 다만, 규 산염제 및 요소제·완 충제의 경우 에는 1톤당 500원	1일 과징금 금액: 생산 능력(수입 량) 1톤당 250원	1일 과징금 금액: 생산능 력(수입량) 1 톤당 2,500 원. 다만, 곡 물류·곡물 부산물류· 박류·섬유 질류·면실 ·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의 경우에는 1톤당 250원	1일 과징금 금액: 생산능 력(수입량) 1 톤당 5,000원. 다만, 규산염 제 및 요소제 · 완충제의 경우에는 1톤 당 250원